

[종합·해설]

현재 종부세 일부 위헌 쟁점별 판단과 의미

“세대원 재산, 공유재산으로 볼 수 없어”

1주택 장기보유자 부과 거주이전 자유 침해

“납세자 세 부담 과도하지 않다” 결정



이강국 헌법재판소장(가운데) 등 재판관들이 13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 위헌소송 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.

/연합뉴스

다고 설명했다.

두 번째 쟁점인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생존권 및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현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.

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이날로 효력을 상실했고,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과조항은 향후 개정하되 2009년 12월31일까지는 잠정 적용토록 해줄 종부세는 부과된다.

또 현재는 종부세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이고 이중과세와 원자본 잠식을 불러온다는 지적과 지방재정권을 침해하고 지방과 차별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려 종부세의 근간은 유지할 수 있게 했다.

◇ 핵심 3대 쟁점=우선 현재는 세대별 합산 규정에 대해 세대원 각자의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볼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합산 과세는 비합리적 이어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.

특히, 부부간 합산 규정은 혼인부부를 복신이나 혼인하지 않은 부부와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에 위배된